

광주지방법원 2022. 6. 10 선고 2021나60488(본소), 2021나60471(반소) 판결

[대여금 ·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49862(본소), 2022다249879(반소) 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6. 10 선고 2021나60488(본소), 2021나60471(반소)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여수시법원 2021. 6. 2 선고 2020가소14143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기선

변론종결 2022. 5. 20.

판결선고 2022. 6. 10.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2021. 6. 2. 선고 2020가소 14143(본소),

2020가소3150(반소)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858,3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5.부터 위 금액 중 19,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8. 3.까지, 나머지 1,858,332원에 대하여는 2020. 12. 2.까지 연 10%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 및 이 사건 반소에 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20,858,3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5.부터 이 사건 본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6.부터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제1항의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이 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 1) 피고는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운영되는 C 네트워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지역본부장으로서 상위 회원이고, 원고는 2015년경 피고의 소개로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한 하위 회원이며, 소외 D은 필리핀에서 C 사업을 운영하고자 2015년경 피고와 원고를 만나게 되었다. 이 사건 사업의 약관상 하위 회원의 상품판매 실적 등이 상위 회원의 수당 결정에 반영된다.
- 2) 원고는 2015. 7. 3.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의 요청으로 D에게 2015. 8. 28. 2,500만 원, 2015. 8. 31. 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 3) 원고는 D에게 위 대여금 3,000만 원에 변제 독촉을 하였으나 D으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하자, 피고에게 위 각 대여금 합계 4,000만 원에 대한 변제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9. 말경 원고에게 위 4,000만 원에 대하여 이자는 연 10%로, 변제기는 2016. 8. 말로 정하여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 4)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8. 3.경까지 수회에 걸쳐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변제 독촉을 받고서 별다른 이의 없이 원고에게 일정기일까지 원리금을 전부 변제하겠다고 수회 약속하였고, 원고에게 변제 명목으로 2017. 12. 9. 1,000만 원, 2018. 3. 21. 500만 원, 2018. 6. 26. 1,000만 원, 2018. 10. 5. 600만 원 합계 3,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배척 증거 : 을제8호증의 기재]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대여금 내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약정금으로서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연 10%의 비율에 의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4회에 걸쳐 변제한 합계 3,100만 원에 의한 원리금 변제충당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내지 약정금인 20,858,332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충당 최종 종기일 다음날인 2018. 10. 5.부터 위 금액 중 19,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본소장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0. 8. 3.까지, 나머지 1,858,332원에 대하여는 2020. 11. 27.자 본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분 송달일인 2020. 12. 2.까지 약정이율인 연 10%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투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1,858,332원에 대하여도 본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위 조항의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것인데, 위 금액은 소장에서 청구되지 않았다가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비로소 추가된 것이므로 위 변경신청서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위 특례법상의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1,858,33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위와 같이 인정된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인정할 수 없다).

2. 피고의 항변 및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먼저 피고는, 원고와 D이 이 사건 사업을 계속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D이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인데, 이들이 2017. 5.경부터 이 사건 사업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제5, 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한 적이 없고, 설령 피고가 위 D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기재된 서면에 의한 보증방식, 피고에 대한 통지의무 등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은 대여금 내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약정금으로 인정되는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도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인정할 수 없다.

다. 마지막으로 피고는, 원고가 D에게 D과의 내연관계(불륜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생활비 또는 차량구매비용 등 개인적 목적으로 증여한 3,000만 원을 피고에게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차량구매 지원금 등의 용도로 대여해 주었다거나 이 사건 사업의 손실금으로 기망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위 3,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약정하게 한 것이므로, 이는 불법원인급여로서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거나 원고의 기망행위로 인한 것이어서 취소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하고, 오히려 원고가 위와 같은 기망 내지 반사회질서 행위에 의해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2018. 3. 21. 500만 원, 2018. 6. 26. 1,000만 원, 2018. 10. 5. 600만 원 합계 2,100만 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갈취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어서 피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2,1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8. 10. 6. 이후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반소로써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 및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역시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본소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본소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며, 다만 항소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채승원, 판사 유현주, 판사 신호승

별지